

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

이 약관은 예금주와 우리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나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 1 장 공통사항

제 1 조 적용범위

이 약관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합니다.

1. 외화보통예금
2. 외화당좌예금
3. 외화정기예금
4. 외화통지예금

제 2 조 지급시기

①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.

② 외화정기예금 및 외화통지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. 다만,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제 3 조 이자계산

외화예금 이자의 연간일수는 360일로 적용하여 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.

제 4 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

①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합니다. 다만 미화현찰로 입금한 예금을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현찰매입율이 적용됩니다.

② 미 달러화 이외의 외화 현찰을 외화예금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

③ 미 달러화 현찰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외화로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 단, 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
④ 외화 현찰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현찰로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

부담하기로 합니다.

- ⑤ 원화대가 매매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외국환으로 대체되는 경우로서, 입금 당일 대체 인출의 경우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
- ⑥ 은행은 ②~⑤항과 관련한 수수료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합니다.

제 5 조 약관의 적용

외화예금거래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약관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6 조 약관의 변경

-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
-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하도록 합니다. 다만 기존 이용자가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④ 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
제 2 장 외화보통예금

제 7 조 이 자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셋째주 토요일(이하 “기준일”이라 한다)에 셈하여 기준일 익일(이하 “원가일”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고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.

제 3 장 외화당좌예금

제 8 조 지급특례

은행은 예금주의 수표·지급청구서 없이 이 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에

해당하는 경우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
1. 각종이자, 지연배상금, 보증료, 수수료
2. 수입어음원금, 외화표시 내국신용장결제대금,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부도대금

제 9 조 이 자

이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제 10 조 준 용

수표용지교부, 수표금지급과 지급위탁취소, 수표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, 수표금 지급과 면책 등, 대리인과의 거래, 해지, 해지후 처리, 당좌예금 거래보증금은 "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" 제 4 조, 제 6 조, 제 9 조, 제 10 조, 제 11 조, 제 12 조, 제 13 조 및 제 14 조를 준용합니다.

제 4 장 외화정기예금

제 11 조 이 자

- ① 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- ② 만기일 후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입금 당시 약정이율의 3/10 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7일 미만:무이자, 7일 이상 1개월미만:약정이율의 1/10, 1개월 이상:약정이율의 3/10, 3개월 이상:약정이율의 4/10, 6개월이상:약정이율의 5/10, 1년 이상:약정이율의 7/10 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빼기로 합니다.

제 12 조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

- ①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 11조 제 3항에 불구하고 처음 예금일로부터 계약변경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1조 제 1항의 이율을 적용합니다. 다만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빼기로 합니다.
- ②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하는 경우, 그 이자는 변경전 처음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1조 제 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.

제 5 장 외화통지예금

제 13 조 거치기간 등

- ① 이 예금은 예금일로부터 7일 이상의 거치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.
- ② 예금주는 이 예금을 청구할 때에는 2일 전까지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
제 14 조 이 자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은행이 고시하는 이율로 계산하여 거치기간 경과 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- ② 이 예금을 거치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[변경사항]

변경일	내용	관련 조항	기준 가입 고객 적용 여부
2019.2.25	수수료 부분 명확화	제4조	적용
2024.05.30	거래중지계좌 조항 삭제 조 번호 변경 및 문구 재정비 외화당좌예금 지급특례 조항 일부 삭제	제5조~6조 제7조, 제12조 제8조	적용